운영위원회 운영규칙

제 정 2018. 09. 10.

개 정 2023. 10. 13.

개 정 2024. 02. 23.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연구본부장, 각 실장,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본부장이 대리한다.〈개정 2023.10.13..2024.2.23〉
 -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④관리직·정보직 1명, 전문연구원·전문행정원 1명 등을 위원 정원 내에서 원장이 지명하며,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- **제3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기획조정실 장이 된다.〈개정 2024.2.23〉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원규관리규정에 따른 원규의 제정, 개정,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사업수행규칙에 따른 연구업무의 관리·조정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- 3. 간행물발간편집위원회규칙에 따른 심의사항
 - 4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소집과 의결)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②항에서 규정하는 규정과 규칙이 없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**제6조(위원의 제척)** 위원회의 부의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- 제7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23.10.1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24.02.2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